솔브레인 주식회사 이사회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솔브레인 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 ① 이사회는 제13조가 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.

제4조(이사회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.
- ③ 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, 회계, 법률,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(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-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, 사외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7조(감사의 출석)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9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한다.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0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이 (정당한 사유 없이) 5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부의안건)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-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
- 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- 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3) 지점의 설치.이전.폐지
- (4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.해임
- (5)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6) 주주총회의 소집

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
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
- (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- (11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2) 계열회사와 재무적 거래(투자, 보증 등)의 대한 승인
- (13) 신주발행, 사채의 발행
- (14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5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6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
- (17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18) 중간배당의 결정
- (1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20)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분할합병
- (21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(22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
- (23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
- (24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
- (25) 교환사채의 발행
- (26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
- 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- (1) 정관 변경
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(3)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
- 의 양수
- (4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등
- (5) 이사.감사의 해임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- (9) 사후설립
- (10) 주식의 할인발행
- (1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2) 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의 소각
- (13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- 나. 보통결의 사항
- (1) 이사, 감사의 선임
- (2) 이사, 감사의 보수의 결정
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주식배당의 결정
- 다. 특수 결의
- (1) 이사.감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2)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
- 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- (1)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- (2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(3)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
- (4)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
- (5) 자기자본의 10%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외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- (6)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%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(7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
- (8) 자기자본의 5% 이상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
- (9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
- (10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채무를 면제,인수
- (11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- (12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
- (13)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- (14)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- (15)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
- (16) 기업정보공시의 감독
- (1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18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(19)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- (20)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21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-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.
- 2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.
- 3.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에 관한 사항
- 5. 연간 주요 환경경영(기후변화)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리스크, 대응에 관한 사항
- 6. 연 1회 이상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
제14조(권한의 위임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제3조 제3항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감독)의 권한을 감사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)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6조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7조(부속실 등)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 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-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